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해외 시장에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수행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창업기업 모집**은 2025년 3월~4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검증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정착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선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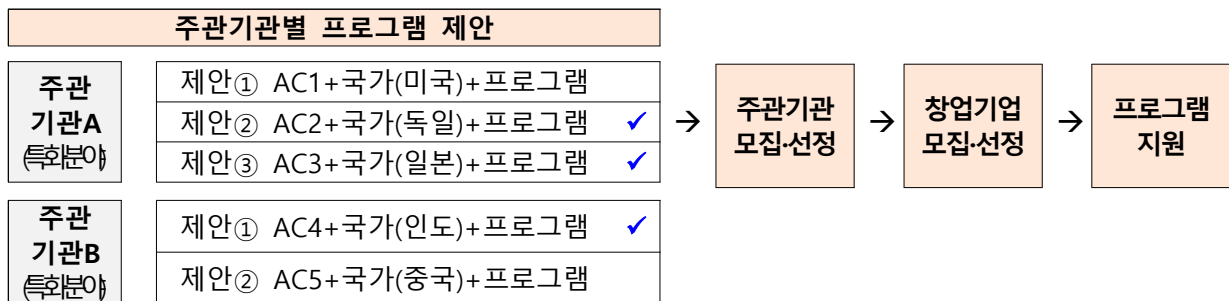
- (선정규모) 7개사 내외
- (협약기간) 1+1년 ('25~'26년)
 - * 1년 단위로 협약하며, 각 협약기간 종료시점 별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1년) 결정
- (배정예산) 평균 500백만원 내외
 - 신청기관별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수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산출하며, 주관기관별 운영비 지원규모 상이
 - * 지원규모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른 변동 가능

< 범부처 협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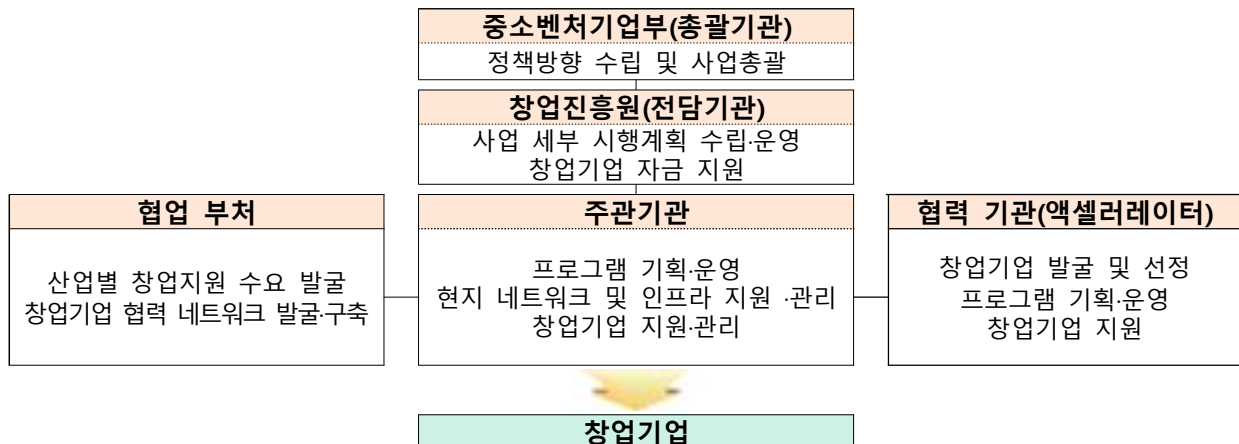
- ◆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분야는 업력 10년까지 가능)
- ◆ **(지원규모)** 창업기업 140개사 내외
- ◆ **(지원기간)** '25.5월~11월(예정) (* 창업기업 모집은 '25년 3월경 공고 예정)
- ◆ **(지원내용)** 진출 희망국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를 위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여비·전시회비 기업당 평균 30백만원 등 지원

- (1) **국내 프로그램** : 현지 시장 진출에 앞서 기업별 경영·기술 진단, BM 전환 멘토링, KPI 수립, 산업 교육 및 현지 파트너사 비즈니스 미팅 사전 매칭 등 지원
- (2) **해외 프로그램**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사 매칭, 협업 네트워킹, IR 행사 등을 통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 지원
- (3) **자율 프로그램** : 성과교류회, 선배 기업과 간담회 및 투자사 네트워킹 등 기업의 해외시장 탐색 지원을 위한 부처(주관기관)의 자율 활동 지원

◆ (지원절차)



◆ (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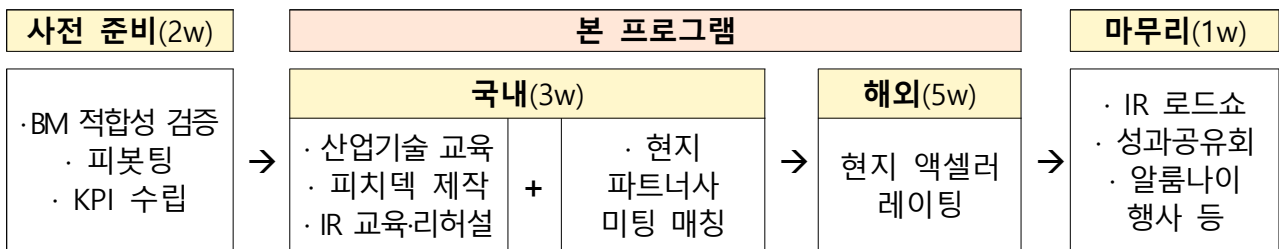
2

세부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기획

-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 부처 및 주관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 활용한 자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전체 프로그램은 총 10주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외 프로그램은 최소 4주 이상으로 구성

<프로그램 구성 예시>



- ⁽¹⁾국내 프로그램) 타겟 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기업별 KPI 수립, IR 교육 등 현지 시장 진출전 역량 강화 지원
- ⁽²⁾해외 프로그램) 협업 파트너 발굴, 비즈니스 미팅, 참여기업 홍보, 및 투자유치 IR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지원

(해외 프로그램 구성)

- ① 사업기간, 창업기업의 협약기간 및 신청 기관의 세부 프로그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
- ②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등을 고려하여 연속 일정으로 기획하지 않아도 됨
 - * (예시1) 국내(2주) → 해외(3주) → 국내(1주) → 해외(2주) → "가능"
 - (예시2) 국내(2주) → 해외(5주) → 국내(1주) → "가능"
- ③ 창업기업의 필요사항, 성장단계 등을 반영하여 그룹 및 개별 프로그램 기획 필요
- ④ 복수의 액셀러레이터를 제안하는 경우, 모든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프로그램(최소 4주) 제안 필요

- ⁽³⁾자율 프로그램) 성과교류회, 선배 기업과 간담회 및 투자사 네트워킹 등 기업의 해외시장 탐색 지원을 위한 자율 활동 지원

※ 창업기업 선정 이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맞춤형 세부 프로그램 확정 필요

② 진출 국가 선정

- 창업기업 수요, 주관기관(부처)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지원 가능한 진출 국가 선정
- ‘국가’ 단위로 지원하며 신청기관별 복수의 국가도 지원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에 한해 선택될 수 있음

- ① 복수의 국가로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 구성은 신청 국가별로 제안해야 함
- ② 주관기관별 지원기업 수는 창업기업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③ 국가별 창업기업 수요*, 신청기관과 액셀러레이터 및 파트너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필요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희망 권역(국가) 수요조사 결과 [참고1] 참조

③ 특화 산업분야 설정

- 주관기관(부처)의 산업 분야의 전문성, 역량 및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지원 분야 설정
- 창업기업 공고시, 신청기관이 제안한 산업 분야로 기업 모집 예정
- * [참고(‘24년 산업분야)] : 에듀테크/디지털 콘텐츠, 푸드테크/애그테크/그린바이오, 스포츠 융복합/헬스케어, 핀테크, 기후테크, AI/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물류/유통

④ 협업 해외 액셀러레이터 구성

- 신청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외 프로그램 기획,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아래 (1)~(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액셀러레이터 필수 참여
- (1) 진출국 권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해외 액셀러레이터
- (2) 최근 3년(‘22년~’24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인·아웃바운드)한 경험 및 실적 보유
- (3) 사업 협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총괄인력 1인 및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총괄인력)

- ❶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 인·아웃바운드(In/Outbound) 액셀러레이팅 운영 경험 및 성과를 보유한 자
- ❷ 협업 액셀러레이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전담인력)

- ❶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참여하는 인력으로 타 프로젝트는 참여 불가
- ❷ 협업 액셀러레이터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한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중, 본 사업 참여 목적으로 협업 액셀러레이터와 계약한 자

※ 국가별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총괄인력 1인, 전담인력 총 2인 이상 배치

- (4) 현지 프로그램 운영시, 창업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공간(개별 사무공간, 공유 오피스 및 회의실 등) 지원

※ 지원 국가별 1개 이상의 협업 액셀러레이터를 구성해야하며, 신청 기관과 액셀러레이터 간 체결한 MOU, 계약서 등의 협업 증빙 서류 필수 제출

5 협업 파트너 구성

- 산업 전문가, 글로벌 투자, 정책, 법률 및 규제개선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파트너사, 전문가 및 멘토 등 구성
 - 창업기업이 국내·현지 협업 파트너 및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글로벌 진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파트너 제시
- * 현지 바이어, 대학, 연구소, 미디어사,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해외지사 등

6 기타

- 주관기관 협약기간 내 국내에서 협업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예시 : GMEP 성과공유회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
- 국내외 창업 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해외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 ②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 *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소속기관(법인)은 신청 제외
 -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

※ 소관 또는 관계부처로부터 사업 신청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⑥ 기타 창업진흥원이 참여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요건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관기관 지원체계 마련

(1) 전담조직 구성

- 신청기관 내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 1인 및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

(총괄책임자)

- 특화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분야 관련 경력을 7년 이상 보유한 자

(전담인력)

- ❶ 전담인력이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에만 100% 참여하는 인력으로 타 프로젝트 참여는 불가함
- ❷ 최소 1인의 이상 영어 능통자
 - * TOFLE, IELTS, TOEIC, TOEIC Speaking test 등 공인어학점수(취득 시점 미고려) 혹은 영미권 국가 체류 및 학위 등에 이에 준하는 영어 회화 능력 보유자

TOEFL	TOEIC	IELTS	OPIc	TOEIC Speaking
90점 이상	850점 이상	6.5 이상	IH 이상	160점 이상

- ❸ 최소 1인 이상 창업 관련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총괄책임자 및 전담·겸직인력은 반드시 **신청기관 내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

(2) **공간구축** :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 내 별도 사무공간 마련

(3) **회계처리**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지정은행에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기관

4 신청기관 의무와 역할

① 유망 글로벌 창업기업 모집 · 선정

- (대상)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 (평가시기) '25.4월 예정
- (평가절차)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 (평가위원) 창업기업의 시장성, 기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함
- (평가방법) 협력 액셀러레이터와 설정한 지표에 따라 현지 진출 목표가 명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

- (결과보고) 창업기업 평가를 완료한 후 전담기관에 평가결과 보고
- * 창업기업 평가 관련 세부 가이드는 별도 안내 예정

2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 (운영기간) 창업기업 협약체결 이후부터 '25.11월 내 (예정)
- (프로그램 구성) 본 공고 “2.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결과보고) 사업 협약기간 중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함

3 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

- 창업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사업비 관리, 창업기업 점검 및 최종평가 등 참여기업 지원·관리
- 주기적으로 창업기업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4 협업 액셀러레이터 및 파트너 관리

- 액셀러레이터, 협력기관, 전문가 및 멘토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업하는 내외부 파트너 관리·지원 및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GMEP 행사가 있을 경우 협업 액셀러레이터 및 파트너 국내 초청

5 사업 및 창업기업 홍보

- (설명회) 프로그램 참여기업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 설명회 1회 이상 필수 개최
- (언론홍보) 기획 기사,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6 기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내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

1. 창업기업 발굴·지원, 창업기업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등
2. 창업기업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3.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및 대응자금 집행계획 적정성 등 집행관리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 사업비 정산 및 관리
6. 창업기업 점검 및 성과평가
7. 창업기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 결과,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8.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창업성과 관리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규모

- 연간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수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산출하며, 주관기관별 운영비 및 지원규모 상이
 - 20개사 내외 / 창업기업당 평균 25백만원
 - * 위 운영비는 지급 예시이며,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 창업기업 선정 이후 운영비 규모를 최종 확정하며, 추후 창업기업 지원규모를 기반으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예정

□ 운영비 지원내용

- (지급시기) 2회로 분할하여 지급
 - 협약체결 완료 후 70%, 중간점검 이후 30% 지급
- (정산방법) 지출 항목별로 사업비의 집행을 기록 및 증빙서류로 관리

하고, 협약종료 후 사업비 정산내역서 및 회계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정산 보고서 관련 양식 및 규정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회계정산 및 검토 비용은 본 사업비에서 배정해야 하며 금액은 별도 안내 예정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1.17.(금) ~ '25.3.6.(목)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공고 페이지 접속 → 기관별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K-Startup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모집중 → ["2025년 글로벌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접속 → "사업신청" 클릭

** 별첨된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접수기간) ['25.3.6.\(목\) 15:00](#)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 후 신청확인서 발급까지 완료해야하며, 추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업로드를 위한 서류 준비 (* 우편 제출 불가)

*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는 서류는 업로드 불가 (용량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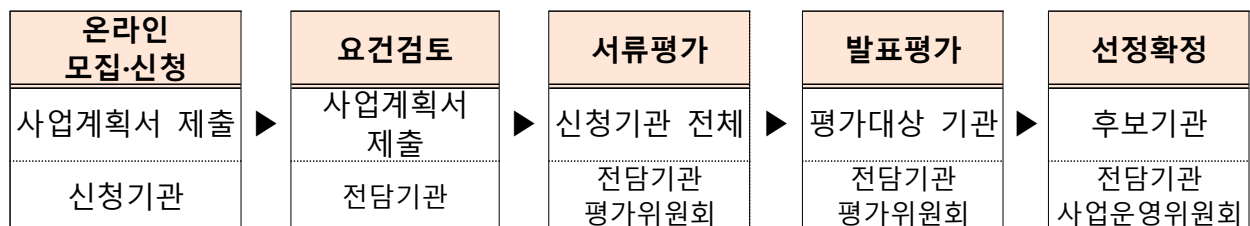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목록	주요내용	비고
제출공문	신청기관(대표기관)의 제출 공문	기관장 직인본 제출
사업계획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자료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담·겸직 등 사업참여 인력별 동의서	인력별 작성
소관(관계)부처 추천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추천서 또는 소관 부처의 추천 공문	부처 직인본 제출

1 평가절차

- (요건검토) 신청기관 전체를 대상, 본 공고 '3. 신청요건 및 자격' 검토
- (서류평가)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등) 기반의 평가를 실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 * 신청규모가 선정규모의 2배수가 넘지 않는 경우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후보기관' 선정
 - *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 기관에 한해 참여하며, 발표평가 세부내용은 해당 기관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 협업 액셀러레이터의 총괄책임자도 발표평가 시 인터뷰 할 수 있음
- (선정확정)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
 - * 평가결과에 따라 진출 국가, 특화 산업분야 및 창업기업 지원 규모 확정

< 선정평가 절차(안)>



2 평가내용(안)

구분	평가항목	주요내용	배점
서류 평가	기관역량 (30)	· 신청기관의 국내외 창업 관련 전문성(이력, 성과 등)	10
		· 참여인력의 규모 및 보유 역량의 우수성	10
		· 산업 분야 설정의 적합성	10
	프로그램 (50)	·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20
		· 협업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성 및 우수성	20
		· 협업 파트너 구성의 구체성 및 우수성	10
	운영계획 (20)	· 사업 홍보계획의 구체성	10
		· 예산 활용계획의 적절성	10
	소계		

발표 평가	기관역량 및 이해도 (25)	· 신청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사업 이해도	5
		· 신청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사업 참여의지	5
		· 참여인력 규모의 적합성 및 보유 역량의 우수성	10
		· 진출 국가 선정의 합리성 및 우수성	5
	프로그램 (65)	· 제안한 프로그램과 본 사업목적과의 부합정도	10
		·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5
		· 협업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성 및 우수성	10
		· 액셀러레이터 참여인력 규모의 적합성 및 역량의 우수성	20
		· 신청기관과 액셀러레이터 소통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10
		· 협업 파트너사 우수성 및 협업계획의 구체성	10
	기업 홍보· 관리(10)	· 창업기업 모집 및 관리계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10
	소계		100

*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위 세부 평가항목 내에서 재구성 예정

8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 선정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중단 등 가능
- ☐ 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5.3.6.(목) 15:00) 내 완료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 (제출 서류 기반 평가)
-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중단 가능

* 실제 확보·설치시, 최초 신청과 동일 수준(경력, 직위, 면적, 위치 등)으로 충족하여야 함

** 현지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2주 전에 확보·설치 필요

-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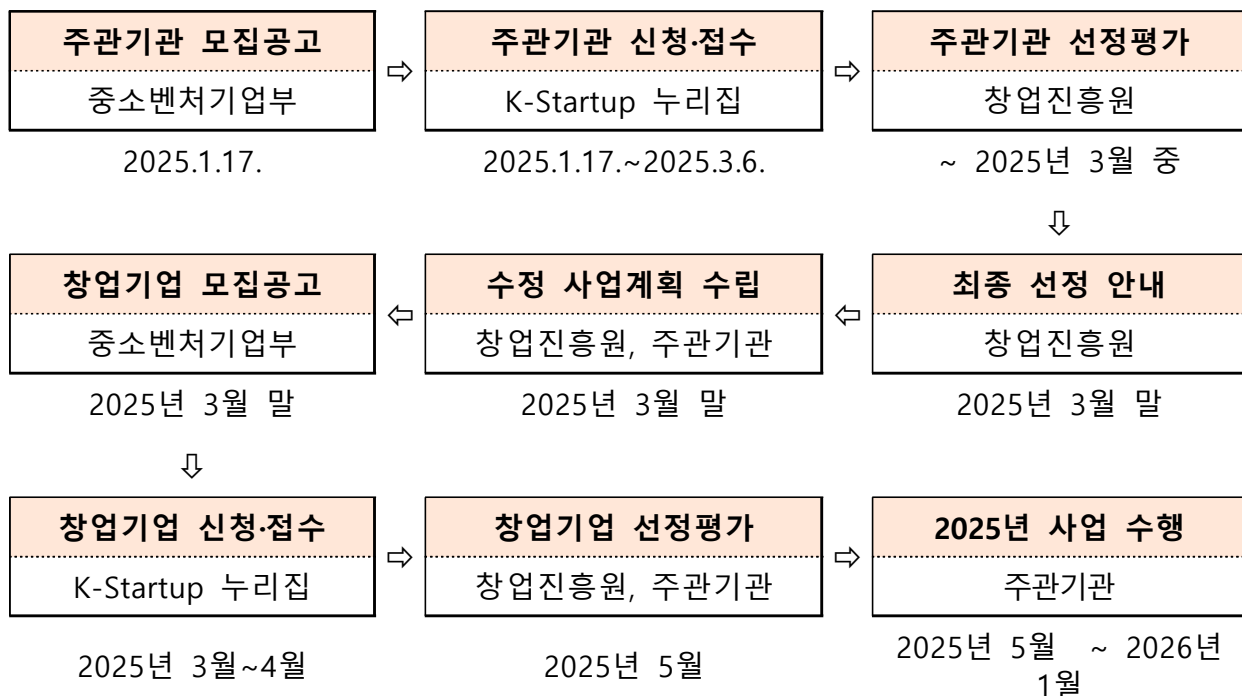
-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신청기관(주관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액셀러레이터, 파트너사 등)의 사업 운영관리 및 사업비 지급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진행
- 선정된 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관리 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일정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시스템운영팀)
- 사업 관련 문의 : dream2@kised.or.kr (창업진흥원 글로벌진출팀)

<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일정(안) >



* 연간 사업 운영 상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

[참고1]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희망 권역(국가) 수요조사 결과(중복응답 허용)

- (희망진출 권역)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180개사 중 북미 123개사(66.8%), 동아시아 115개사(62.5%) 진출로 응답

구 분	응답수	비율(%)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23	66.8%
동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115	62.5%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99	53.8%
남/서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66	35.9%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33	17.9%
북/동유럽 (스웨덴,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33	17.9%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27	14.7%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4	7.6%
중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10	5.4%
아프리카 (남아공, 이집트, 케냐 등)	5	2.7%

- (희망진출 국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응답기업 168개사 중 미국 99개사(58.9%), 일본 63개사(37.5%), 베트남 27개사(16.1%) 순으로 응답

구 분	응답수	비율(%)
미국	99	58.9%
일본	63	37.5%
베트남	27	16.1%
중국	19	11.3%
싱가포르	18	10.7%
인도네시아	13	7.7%
독일	11	6.5%
프랑스	11	6.5%
호주, 뉴질랜드	5	3.0%
태국	5	3.0%

[참고2]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주관기관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정의	한도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용품, 인쇄,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경비 등	30% 이상
		일반용역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비용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관하는 장소, 시설 및 장비,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	
		전문가 활용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등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추진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구입 등 행사 경비	
인건비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기관 한도 내
		겸직인력 수당		
운영비	일반수용비	평가비용 및 수당	창업기업등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기관 한도 내
		소모품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회계감사비		
		기타운영비		
여비	여비	국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내여비	기관 한도 내
		국외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동 사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3% 이하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O/H)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하는 비용 * 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편성 및 집행 불가	5% 이하